

# 제73조 원천징수



## 제73조의 요약

-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및 징수되는 소득자
  - 〔 ① 이자소득금액 :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②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①, ② 소득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부활됨(2010. 1. 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수권·위임받은 자, 대리하는 자, 어음·채무증서 인수·매매·중개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의 중도매매거래에서도 자기보유기간분 이자의 세액을 거래징수금액에 가감(+/-)하여 매도자가 당초의 원천징수의무자(즉 소득지급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세액 납부시기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소규모법인(10인 이하 고용인원 회사) 원천징수세액은 6개월 단위 반기별 납부가능 : 금융·보험업은 제외
-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 법인세 제외·면제되는 소득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미지급소득
  - 비영리법인이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 연합회 등에 대한 예탁이자수입
  - 비영리기관투자자의 국·공채 이자소득
  - 조합원 공동 예탁자금의 이자소득
  -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예탁자금 이자소득
- 선이자지급방식채권을 이자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해산하는 경우 : 청산인과 잔여재산분배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승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 승계

## ●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삭 제 (2008. 12. 26)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⑨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I. 원천징수제도

### 1. 본 조의 개관

#### 1) 본 조의 개요

법인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행 조세체계하에서는 법인이 특정하고 있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그 사업연도 기간에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정률의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법인 자신이 자진확정신고하면서 세액을 납부한다.

본 조의 원천징수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방법의 국세부과와는 다른 방법으로서 소득수취자가 아니라 소득을 외부로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수취자의 수취소득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미리 법인세를 징수하여 예납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본 조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이나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이건 간에 모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4%(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5%),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도 14%(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5%), 비영업대금의 이익·비영업이자에 대하여는 25%를 당해 지급소득으로부터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당해 소득의 실제 지급일로 보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소규모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6개월 단위의 반기별 납부가능하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금융·보험업(금융보험업자 수입이어도 채권이자 원천징수됨)은 제외한다.

소득지급의 원천징수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의 직접적 지급자 뿐만 아니라 중도매매채권 취득보유자, 신탁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당해 소득의 지급의무를 위임받은 대리인, 다른 법인의 어음 등을 매매 및 인수·중개하는 증권회사 등과 같이 대리 및 위임의체를 받는 자, 법인 해산이나 청산 등의 경우와 관련한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및 합병·분할후의 존속법인 등과 같은 납세의무승계자 등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한 기타 상세한 절차 등은 소득세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면 되며, 내국법인 이외의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소득이 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본 법 제9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2) 원천징수제도규정의 이유와 취지

### ① 수동적 세액납부의 축소

현행의 법인세 부과체제가 자진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므로 소득수취자의 납세의무있는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분야를 가급적 축소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등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 등까지도 소득수취자에게 가치분 소득으로 직접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소득이라고 보아 소득지급시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가치분가능 소득분야

소득 중 별다른 비용이나 원가적 개념이 없고 그 소득수취자가 당해 소득 자체를 즉시 이용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의 수취금액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가 당과세기간 동안의 제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차감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에 앞서 그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도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이 적고 무난히 인정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제도란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소득수취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지급자가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에 대하여는 근로·퇴직·자유직업·배당·이자·기타소득 등과 같이 폭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축소하여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및 비영업대금이익만 해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2.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 ① 원천징수의 개념과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는 일반적으로 최종의 과세납부액에 대한 예납적인 것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의 완납적인 것이 많은 반면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는 그 소득수취자가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예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는 개인의 가처분귀속소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대상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지급금액으로부터 공제한 차액만 소득수취자에게 지급하고 당해 공제금액을 그 소득지급자가 소득세의 부담자인 그 소득수취자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국세부과징수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수취자의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의 실질담세의무자와 납세절차이행의무자를 분리한 거래징수제도이다.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수취자가 아니라 지급소득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지급자인데 당해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뿐 아니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도 그 수권 및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

###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구분

원천징수될 대상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소득의 수취자인 개인을 대

상으로 하므로 개인이 수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인 근로·퇴직·이자·배당·자유직업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수취할 수 있는 소득은 개인과 성격이 다른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규정한 이유는 법인의 성격상 개인과 달리 법인은 외부로부터 확정된 소득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비영업대금 이익 등의 형태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은 원천적으로 근로소득·퇴직소득·자유직업소득 등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수취가능한 소득 중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자본출자의 손실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이 될 수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알기 때문이다.

### ③ 원천징수제도의 장점

원천징수제도란 소득발생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절차를 대행해 주는 제도인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 국가입장에서 징세비의 최소화 가능하고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도 편의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신고납부 절차 없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국가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국세를 징수납부하므로 징세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정확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의 지급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므로 연중 매월 조세수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세사업연도 기간중에 징수하기 때문에 세수의 조기확보가 가능하다.
- ◎ 납세자 입장에서 일시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여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본세액의 일부분을 납부한 것이 되어 일시에 과중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산이 가능하다.
- ◎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등 포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소득자의 제반 인적사항이나 그 소득금액의 크기 등의 과세자료가 작성되고 되므로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 ④ 원천징수제도의 단점

단점으로는 일종의 사전과세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표준 등의 확정 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사업연도 종료 후 소득이 있을 때에 과세한다는 일반적인 조세원칙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이밖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되어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완납적인 것에 대하여는 일률적 세율로 비례과세되어 담세력 등과는 어긋날 수 있고 과세상의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인력이나 경비도 상당한 것으로 국세징수의 협력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 3.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지위

#### ① 국가의 징세권 위임과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지급시 소득수취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징수권을 수입한 범위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고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거부할 권리가 없게 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권한을 벗어나거나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초과하여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수권을 납세의무자에게 행사함과 동시에 징수한 세금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함께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안하여 세금부과되었다면 일단 납부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소득을 수령하는 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부과하지 않고 어쨌든 원천징수의무자만을 경유하는 것이다.

### ② 납세의무자와의 간접적 법률관계

원천징수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납세의무자와 직접적 법률관계를 갖지 않음이 원칙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망·출국 또는 행방불명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어도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절차를 통하여서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즉, 국가가 직접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 혹은 보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되면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근로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③ 타율적·강제적 징수납부제도

세법은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규정으로서 원천징수의무 뿐 아니라 소득수취자로부터 법인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 원천징수란 소정의 사업연도 종료와 관련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마다 당해 소득수취자의 전체적 과세표준 상황이나 납부의사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소득으로부터 법인세액을 사전적으로 공제하는 타율적인 납부제도이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납세의무 있는 모든 법인은 소정의 사업연도 종료 후 자진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율적 제도와 상반된 제도이다.

## II. 법인세 원천징수의 요건 (법 제73조제1항)

본 항은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 및 비영업대금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지급금액의 14%(2004. 12. 31까지는 15%) 및 25%(비영업대금이익) 해당액을 상대방 법인의 법인세로 원천징수(상대방은 선납세액)하여 그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규모법인은 반기별 납부 가능)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 ① 이자소득 · 투자신탁의 이익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만이 해당된다.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란 공급된 타인자금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을 말하며, 투자신탁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자산이나 자금을 제공하여 배당 성격의 이익을 말한다. 종전에는 기타소득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소득에 대한 대응경비나 손실이 많아 소득이라기 보다는 피해복구의 뜻이 있어 95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채권 이자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부활되었다.

## 1) 이자소득금액

### (1) 이자소득의 범위

#### ① 이자의 정의와 범위

이자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인데 원금금액의 크기와 원금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이 이자이다.

따라서 이자소득금액은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사용에 대한 대가의 총 금액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자금사용에 대한 대가는 거래유형이나 계약에 따라 이자·이익·분배금·할인액·차익 등과 같이 표현방법이 다양하고 거래관계도 복잡하다.

본 법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범위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도 이자소득을 유형별로 열거하여 그 열거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만을 이자소득이라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10. 3. 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② 실질적 자금제공과 자금의 사용료

이자란 자금의 사용에 따른 대가이다. 따라서 자금을 사용한 자가 사업 수행결과 이익을 보았건 손해를 보았건 관계없이 자금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호

간에 약정된 돈 값을 치르는 것이다.

결국 자금이 제공되면 돈값인 이자는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여기서 자금제공이란 실질적으로 자금이 수수되고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는 이자인데, 명칭은 대여·투자·구입·참여·가입 등 어떤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일정사용기간후 원금을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여 받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자금제공이 아닌 것의 예를 들면, 장부상의 대여, 가공대여금, 출자금투자 등이다.

## (2)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법 제73조제8항 및 시행령 제113조)

### ① 채권보유·양도로 인한 보유기간 이자해당액

채권 등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한 후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취득 후 보유하다가 중도 매도·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 보유기간의 기간적 이자소득금액만을 채권취득보유 각자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으로 하며, 세율을 곱한 금액을 채권보유 해당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으로 하여 거래대가를 정산한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채권액면금액×보유기간(일수 등)×적용이자율로 계산한다.

물론 이런 계산상 금액(채권의 표면금액에 표면이자율×보유기간으로 계산된 공식적 자금이용 대응소득)이 아닌 다른 차익이나 차손은 채권보유평가손익 혹은 채권매각손익으로 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여기서 적용이자율은 당해 채권 등의 약정이자율⊕발행시 할인율⊖할증률, ⊕추가지급 보장이율 등으로 한다. 즉, 총 실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될 세액으로 한다.

### ② 채권보유중에 중도매도한 경우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과 매각손익의 계산사례

㉠ 채권의 액면금액 1억원(2장, 2억원), 약정이자율 10%, 실세이자율 20%, 할인 매출액 9천만원, 만기 1년)

• 이자소득금액 = 할인이익 1천만원 + 1억원 × 10% × 1년 = 2천만원

㉡ 타인으로부터 채권의 취득인수가액 : 195,000,000원. 연이자율 12%, 보유기간

6개월, 이자지급은 1년 후분, 매각시 총 205,000,000원 입금(원천징수세율 15%라 가정함)

- 이자소득금액 = 2억원 × (6개월 / 12개월) × 12% = 1천2백만원

취득가	195,000,000(액면가는 200,000,000)
이자발생	12,000,000(2억원 × 12% × 6/12개월)
원천징수액	⊖1,800,000
수취가능금액	205,200,000
실제매각후 순입금액	⊖205,000,000
유가증권매각손실	200,000

즉,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수입이 12,000,000 계상되지만 유가증권매각손실로 200,000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채권액면에 대한 이자수입과 매각손실은 따로 총액주의로 계상함)

(차변)	(대변)
현            금            205,000,000	유가증권            195,000,000
선   납   세   액            1,800,000	수입이자            12,000,000
유가증권 매각손실            200,000	
207,000,000	207,000,000

### (3) 신탁재산 및 투자외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 ① 채권·증권인 신탁재산 및 투자외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본 항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이 규정한 모든 이자소득 중 채권이나 증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나 할인액 및 상환의 등의 이자소득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및 투자외사의 재산에 귀속된 것이라면 당해 신탁재산 및 투자외사의 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적용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아직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4)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① 자금제공이 아닌 경우**

거래관계상 이자소득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자금제공에 대한 지급소득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이 아닌데 장기할부조건 매입금액에 가산된 이자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5호)상 재화·용역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는 금액도 엄밀히 말하면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들은 별도의 수입금액이 되며 세금계산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체이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이자소득여부에 논란이 있는데,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연체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가 필요없다.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입금표 등만 받으면 된다. 결국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약정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만 이자소득이 된다고 보면 되며, 거래쌍방이 협의하여 공급대가 연체금(연체이자)을 금전사용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주공급대가의 부수금액으로 이자소득이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급대가의 단순지급지연 이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재정부의 유권해석이다(재소독 46073-71, 99. 5. 3).

이밖에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② 자금제공조건 이외의 영업거래조건 대가**

거래대가에 이자를 감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도 거래대가로 확정된 금액이라면 자금공급과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자금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거래와 결부되어 이러한 결부조건에 따라 수취하는 거래조건의 대가 등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외상매입금의 결제기일 전 지급에 따른 할인, 물품매입대금의 조기결제에 따른 예누리, 매출채권의 기일연장에 따른 추가수취금액,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 할부·연불판매에 따른 추가수취금액 등은 자금의 지급 및 회수 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등과 같이 자금사정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그 행위의 원인이 자금거래자체라기보다는 영업거래 등의 자금외적인 면이 더 많이 감안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③ 실질적 소비대차인 것

실질적 자금제공과 이자수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료(이자)지급 등이 이자소득이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확정후 일시적 지급지연으로 인한 사전통보된 연체료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공급대가의 부수액으로 본다. 그러나 정식계약에 의거 특정기간동안 대가를 지급하고 별도의 연체이자를 주고 받기로 하는 거래는 소비대차로 전환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자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영업거래조건에 따라 제반금액을 가감하며, 확정된 채권이나 채무 금액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실질적인 자금제공 등의 측면만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는 소득세법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소득세법 총서 제16조의 이자소득분야를 참조한다.

2) 투자신탁의 이익

①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법인의 배당소득은 개인의 배당소득과는 달리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지만 본 조는 소득세법 제17조상의 배당소득 중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수익의 이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은 여타의 배당소득과는 달리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의 개념으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입출금이 자유로와 일반 출자증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면이 많아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2010. 2. 18 개정)

투자신탁계정 가입통장상의 이익에는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감안되어 기장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원천징수한다.

②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이익

상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분류상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3) 신탁재산귀속 이자소득 등 (법 제73조제2항)

① 채권·증권의 이자소득

본 항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 중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의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의 일종이므로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있으나 채권이나 증권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와 개발신탁수익증권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전되는 대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예납적으로 원천징수가 되도록 본 항이 규정한 것이다.

② 별도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자소득금액의 범위

모든 신탁재산관련 이자소득을 신탁회사와 별개로 보아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채권·증권·타인에게 양도가능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으로서 채권소유자의 각자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계산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이다. 이 중에서 채권의 해당보유기간의 이자가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계산할 이자금액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증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 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 ③ 금융·보험업인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재산신탁에 따라 이를 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며 이 소득의 궁극적 귀속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나 기타 지정인이 그 소득의 수익자가 되는 것인데, 본 법 제5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항은 수익자까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그 신탁재산 각자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신탁재산은 신탁회사에 속해 있으며, 일반 금융수입은 신탁회사 수입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채권·증권 등의 보유기간분 배분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다.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도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있다. 즉,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과 같이 신탁재산의 소득도 그 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인 것이다.

## 2.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시행령 제111조)

### 1) 원천징수 비대상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금의 실질적 원가나 직접적 비용이 없으므로 발생한 이자수입(전체액)자체가 거의 이용가능 소득에 가깝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제외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자수입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가 직접 사업원가로 대응되는

금융사업 등의 경우도 이자수입 스스로를 확정된 소득이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금융업·보험업 등이 해당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채권 등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이라도 원천징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 등은 이자수입 창출을 위해 많은 자금을 예수금으로 받고 여기에 대해 상응하는 지급이자가 주요 대응원가로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관련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 제 (2009. 2. 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용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2009. 12. 31 개정)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을 대한 이자수입 (2009. 2. 4 개정)
  -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2009. 2. 4 개정)
  -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9. 9. 21 개정)

## 2) 법인세 비과세 · 제외 · 면세소득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 ① 원천징수배제의 이유

상기 시행령 제1호는 본 법 및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법인세가 원래부터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 혹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직에 대한 예금·적금이자소득, 조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득 등도 수취자의 당해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원천징수외무 제외사항은 외국법인에게도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공법인 등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 ② 원천징수 비적용 과세제외소득의 유형

본 법 제2조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국가조직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의 지급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이익 등과 같이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본 법 제51조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과 같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비과세소득도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산출세액 1,000원 미만의 소액부징수금액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액부징수금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한다.

## 3)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수입금액 (시행령 제111조제2항)

### ① 금융·보험업 주 수입의 원천징수 배제 해석

본 법 제73조의 이자소득금액에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도 포함한다고 규정

하였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대상이라는 뜻이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일반금융수입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에 대해서는 2010. 1. 1 이후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다음의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서 열거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10. 2. 18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009. 2. 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3. 12. 30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9. 2. 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2009. 2. 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2009. 2. 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009. 2. 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009. 2. 4 개정)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 되는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2009. 6. 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9. 6. 8 개정)

#### ② 금융·보험업 이자는 본래의 사업수입이므로 원천징수에서 제외함

이미 논의하였듯이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전액이 소득수취자의 가처분소

특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인으로부터 수신을 받아 이를 여신하는 것이 금융보험업의 주업인데 여신에 대한 자금 사용의 대가를, 이를 이용한 소득지급자 입장에서는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지만 당해 여신자인 금융·보험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자 등의 수취금액이 당장 가치분으로 귀결되지 않고 자금을 예탁한 자들에게 재차 이자소득으로 지급되며 이 때 당해 자금예탁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이와 같이 금융보험업자는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행위를 중개하는 자의 일종인데 이러한 논리적인 점 이외에도 자금의 여·수신금리차이가 궁극적 귀속이익인 금융보험업자에게 수입금액 자체를 대상으로 원천징수함은 지나치다는 면도 있다.

이와 같이 타인자금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기간경과에 따라 발생 지급하는 대가금액은 그 지급조건이나 거래상대방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라는 개념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라는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보다는 사업소득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가 더 기본적이고 따라서 금융보험업 본업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2010. 1. 1부터는 채권 등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었으나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은 금융업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2008. 6. 1 이후부터는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0. 1. 1부터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④ 금융·보험업의 범위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르면 된다. 이밖에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금융업에는 통상의 금융기관(대규모 금융회사 등) 외에도 증권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법의 금융기관이 아니고 상법상의 대금업·파이낸스업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다.

금융업이란 돈을 예수(조달)하여 빌려주는 것인데, 대금업은 빌려만 주고 조달기능이 없기 때문이다(조달이라야 타금융기관에서 차입, 빌리는 것인바 금융이 아님).

#### 4) 비영리공공기금의 국·공채 이자소득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

##### ① 비영리기관투자자(건강보험·연금 및 공제사업자)의 국·공채 계속보유 이자소득

건강보험·연금 및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공익법인 등으로서 기금을 관리·운영하거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투자자인 법인이 국채나 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이자지급자의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있다. 결국 국·공채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i) 기금을 관리 운용하거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투자자로 열거된 법인이어야 하고, ii) 건강보험·연금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하며, iii) 당해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이자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 ②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채 등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수출입금융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등을 말한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004. 2. 28 신설)

### ③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및 상환일까지 보유하는 등록 국·공채

상기 시행령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국·공채는 국채법이나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다음의 국·공채를 말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관련법령

##### ● 국채법 제5조 【국채의 등록】

- ① 국채는 기명(記名) 또는 무기명(無記名) 증권으로 한다. (2011. 4. 8 개정)
- ②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국채를 등록할 수 있다. (2011. 4. 8 개정)

##### ● 국채법 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 ① 국채의 원금 상환(償還), 이자 지급, 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4. 8 개정)

##### ● 공사채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사채(公社債)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보전(保全)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5. 19 개정)

##### ● 공사채등록법 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2011. 5. 19 개정)

## 5) 과세된 미지급소득 및 비영리법인 용자금 및 연합회 예탁이자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제4호)

### 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상기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도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는 당해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법인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인이 임의로 익금산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비영리법인의 회원 등 용자금과 연합회 예탁이자

이밖에 제4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용자금을 대부시 당해 용자금대부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연합회나 중앙회에 예탁금을 예탁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배제하고 있다.

## 6) 증권안정기금·채권시장안정기금 등 이자수입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의 조합원(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배제하도록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가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의 증권시장안정기금·채권시장안정기금·투자신탁안정기금 등의 이자수입이 이에 해당된다.

##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이자소득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7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신예금·국민연금으로부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주택법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 지급당시 그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에 따라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주택자금지원의 일환인바, 99년 이자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3. 원천징수의무자의 유형

### 1) 소득금액의 직접적 지급자 본인 (법 제73조제1항)

#### ① 이자소득금액 등의 직접 지급자 본인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본인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상관없이 모두 본 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은 외부로부터 여러 유형의 대가를 수취하는데 이 중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및 이 밖의 다른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소득수취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본 법의 원천징수는 소득수취자인 법인 중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만으로 한정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 법 제98조가 소득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 ② 실질적인 소득지급자

이자소득금액 등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려면 실질적인 소득의 지급자이어야 하며 그 지급행위도 실질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급행위가 전제가 되는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의 상계 등은 비록 이자소득이 계상된 것이라 하여도 실제 외부

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지급자 등이 차입금 등을 그의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거나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금을 실제로 사용 및 운용한 후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이고 포괄양도받은 차입금인 경우도 이 차입금을 사업에 사용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 2)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및 위임받은 자 (법 제73조제4항)

### ① 적법한 수임인이나 복대리인 등

본 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이자소득금액 등의 실제 지급자 본인을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당해 소득금액의 실제 지급자로부터 대리 및 위임을 받은 자 혹은 이들로 부터 재차위임을 받은 복대리인까지도 소득수취자에게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법 대리인 등으로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천징수의무 및 징세권과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대리의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대리 및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전적으로 있고 본인이나 위임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전적으로 배제된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⑫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009. 2. 4 개정)

## ② 최종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이밖에 채권의 이자 및 수익증권의 분배금 등을 이체나 전금받아 수익자에게 송금할 때 그 지급위임을 받은 계속관계의 자 중 최종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의 적법한 대리 및 위임을 받았는지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판별한다. 일반적 사례로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반 유통되는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시의 원천징수의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리 및 위임권을 수여받은 당해 금융기관에게 있다.

## 3)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대리·위임의 의제 (법 제73조제5항)

### ① 실제의 지급거래 실무담당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 특별한 대리 또는 위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의 표견대리개념 등에 의거 금융회사 등과 어음 및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금융회사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는 신용제고 및 거래편의상 혹은 불특정다수인에게의 신속이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을 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융회사 등은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것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채권·증권발행 내국법인이 직접 원천징수할 필요없이 이들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금융회사 등이 포괄대리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② 외관중시 및 표견대리의 개념

이런 거래관계상 어음이나 채무증서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 및 수익의 지급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어음 및 채무증서는 실제 내국법인이 발행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지급 및 거래 실무는 당해 금융회사 등이 담당하며 소득의 수취자도 이러한 금융회사 등만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따라서 본 항은 앞에서와 같이 대리 및 위임이 당연관계 및 인위계약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라 할지라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을 인수·매매·중개행위를 한다면 이 자체를 금융회사 등과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금융회사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이다.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와 취급회사 간에 별도의 특별한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 하여도 외견상 이러한 금융회사 등은 모든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상의 편의나 민법 규정상의 표견대리개념을 준용하여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③ 금융회사 등의 범위

본 항의 규정에 의거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취급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등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10. 2. 18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009. 2. 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3. 12. 30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9. 2. 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2009. 2. 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2009. 2. 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009. 2. 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009. 2. 4 개정)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

되는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2009. 6. 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9. 6. 8 개정)

#### 4) 중도매매채권의 경우 양도자의 보유기간이상의 세액을 스스로 원천징수함 (법 제73조제8항)

##### ① 일반채권·증권·양도성증서 등의 중도매각법인과 매입취득자의 세액계산정산

국공채·일반채권·증권·양도성증서 등은 소유자가 계속 바뀔 수 있고 액면약정이자율에 따라 보유기간동안 이자소득이 꾸준히 발생되며, 실제이자율과의 차이에 따라 채권 등 양도차손익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약정이자율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만이 이자소득금액인데, 이러한 채권을 구입하여 계속 보유하거나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거래손익을 계상하는 매각법인자체가 자기의 보유기간분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채권의 중도매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 물론 채권 등 최종 보유자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실제 지급자 혹은 지급대리인·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② 채권의 중도매각시 해당기간 발생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유통채권의 중도매각시 매도자가 보유기간의 자기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왜냐하면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채권 가격결정이 복잡해지는데, 세금관련하여 채권가격계산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채권시장의 활성화차원으로써,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자기보유후 매도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을 소득지급자인 거래상대방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다.

③ 채권 등의 중도매각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자기원천징수의 사액과 회계처리예시

채권 등의 액면가 1억원, 액면이자율 12%(원천징수세율은 계산편의상 14%라고 가정함), 만기는 1년(이자지급은 1년 단위), 5개월째 중도매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주민세는 무시함).

- 갑회사의 원초취득

(차변)		(대변)	
유가증권	1억원	현금	1억원

- 갑회사의 5개월째 매각 1억원×12%(5월/12월)=5백만원의 기간이자가 계산되며 기간분 원천징수 해당 세액은 70(=500×14%)이며 이 금액을 원천징수함.

(차변)		(대변)	
현금	105,000,000원	유가증권	100,000,000원
선납세금	700,000원	수입이자	5,000,000원
(법인세 신고시 차감)		제예수금(다음달 납부)	700,000원

즉 자기보유분 이자에 대해 스스로 제세예수금으로 계상하여 다음 달 세금을 내고, 해당 같은 금액을 선납세액으로 기재하며, 이 금액은 1년 후 법인세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함.

- 을회사의 취득

(차변)		(대변)	
유가증권	105,000,000원	현금	105,000,000

- 을회사가 1년째 채권발행자에게서 만기에 이자수취(1,200만원에서 갑부분 500만원을 제외하고 자기보유기간 7개월치 700만원의 14%인 98만원을 원천징수하고 602만원 수취) 채권의 중도매매가 아니고 만기에 이자받는 경우는 이자지급자가 채권 나중취득자의 해당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에서 세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함.

(차변)		(대변)	
현금	111,020,000원	유가증권	105,000,000원
선납세금	980,000원	수입이자	7,000,000원
(현금 111,020,000=채권액 1억원+갑회사이자 500만원+을회사이자 700만원-세금 98만원)			

상기에서와 같이 갑회사는 500만원의 수입이자에 대해 14%에 해당하는 70만원의 원천세납부액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법인세 신고서의 선납세액으로 하고, 자신의 선납원천납부세금은 수입이자 5백만원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납부하는 금액에 대응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된다.

을회사는 자신의 이익인 700만원에서 14%인 9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결국 갑·을 각회사는 자신의 보유기간분 이자소득(갑회사는 5개월이자 500만원, 을회사는 7개월 이자 700만원)에 대해 각각 14%의 세금인 70만원(갑)과 98만원(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선납세액은 재무제표상 반영되는 이익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인 14%로 균형되었고 원천징수납부로 마무리 된다.

#### ④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채권중도매도에서 제외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채권의 중도매도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상당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매수자가 해당채권매매거래시 채권거래대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며,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한다.

### 5) 원천징수의무자를 승계한 경우 (시행령 제116조)

#### ① 해산사의 청산인·잔여재산분배수취자의 연대납세

본 법 시행령 제127조는 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이나 합병·분할에 따라 소멸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 및 합병 또는 분할후의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의무도 다른 납세의무의 승계와 함께 승계되도록 다음의 시행령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합병·분할시의 존속법인

상기 시행령 제2항은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에 관한 제반의 무승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흡수합병 또는 분할후의 존속법인 및 신설합병 후의 설립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책임을 진다.

**III. 원천징수방법** (법 제73조제1항·제9항)

본 조 제9항은 법인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시행령은 원천징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외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원천징수에 대한 제반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절차와 관련된 기타의 내용은 소득세법에 의한다.

## 1.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세액계산

### 1) 원천징수적용세율

#### ① 일반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의 14%

앞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금액 총액의 100분의 14(2004년 12월 31일까지만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데 채권·증권 및 적금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동일 혹은 유사조건으로 발생하는 일반 소비자금융방식의 자금제공 대가인 일반 이자소득에 기본세율인 14%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투자신탁의 이익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소비자금융상품의 일종이므로 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한다.

#### ② 비영업대금이자 25%

본 조 제1항제1호(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서는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관계나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비영업대금은 상호 간에 지급하고 수취하는 금액이 일반 소비자 금융과는 달리 이자율이 큰 경우가 많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영업대금은 비교적 자유경쟁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대금행위를 억제할 필요도 있고 상대적 이자지급 금액이 크므로 형평과세의 개념에서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이란 i)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ii)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전 대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비영업대금이라 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인지는 사실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법상의 관련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의 비실명이자소득의 90%

1989년의 본 조 개정부터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법상의 세율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고 본 법 자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에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차등세율 및 소득세법의 차등세율이 적용될 소지가 없다.

왜냐 하면 금융실명거래법은 소득세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차등세율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만 규정하므로 법인의 이자소득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자지급시까지는 법인 명의로 예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실명화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실명개인으로 보아 차등과세율인 9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무상 법인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금융거래를 할 실익이 없으나 어쨌든 실명이 아니라면 비실명개인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 2) 원천징수세율적용대상 총 지급액

### ① 세율역산 총 지급액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대상 금액은 지급금액 자체인데 법인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당해 법인세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소득수취자에게 지급한다.

만일 법인이 소득지급시 순액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총 지급액은 당해 순지급액에 원천징수세율로 역산하여 산정하는데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 지급액으로 보는 금액]**

$$= \text{소득수취자의 순수취액} \times \frac{1}{1 - \text{원천징수세율}}$$

**② 손익지급계약·구상권행사 등**

이와 같이 법인이 지급하기로 확정된 총액이 원천징수대상금액인데 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착오 등으로 당해 확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도 있는바, 원천징수상당 법인세는 당해 확정금액에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 되므로 소득지급자는 당해 소득수취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소득수취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미회수금액을 그 미회수를 결정한 시점에 또 다른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의 순액으로 보아 상기 계산방식으로 총액을 재계산한다. 그러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였다면 이 지급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고 공제한 잔액으로 보아야 한다.

**③ 차입금과 지급이자 중 이자우선지급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구분 약정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일괄변제시 이자 먼저이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즉, 비영업대금으로 채무자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회수불능채권 등이 되어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회수시 원금·이자전액 회수가 일부인 경우 원금 먼저 회수로 본다. 이자원천징수는 차후문제이다.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원천징수하여야 할 시기**

**1) 소득지급시기가 원천징수할 시기임**

① 소득의 지급시기·지급한 달

본 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때란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로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실무상으로는 소득지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만 납부하면 실무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적법히 이행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때에 소득수취자로부터 법인세 상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는 양 당사자간의 금액수수 문제이고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은 징수일인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기만 하면 적법히 완결되기 때문에 결국 소득지급일 혹은 소득지급시기가 어느 날인데 실무상 보다 엄격히 말하면 어느 월에 속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여부와 징수납부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소득금액의 실질적 지급시기

원천징수시기는 결국 소득금액의 실질적 지급시기로 하면 되는데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을 수수하면 외견상 지급시점이 확연하여 별문제가 없으나 상계·대체·이전·전환·계약·해약 및 기타의 상황 등과 같이 외관적 수수행위가 없다면 지급시기를 의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시기의 의제개념에서 결정적인 요점은 소득수취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이용가능상태로 되어 있는냐인데, 이용가능이란 현실적인 사용가능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권리의 행사가능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

## 2)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 ①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은 이자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지급시기로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1. 15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98. 12. 31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2010. 12. 30 개정)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2009. 2. 4 개정)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2010. 2. 18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 12. 30 개정)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 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2010. 2. 18 개정)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 소득세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이밖에 원천징수를 위한 지급시기 의제의 사례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는 사채원금의 상환시를, 환매채의 매매차익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

한 상환일이며,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을, 공사채형수익증권의 분배금은 이를 지급받은 때를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② 차입금 원본에 대한 이자의 우선변제

민법상의 이자지급 규정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충당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무총계의 일부가 변제됨에 있어서 항상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도 이자우선변제의 순서에 따라 이자소득의 변제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반면에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에 있어 쌍방간에 원본을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별도의 상호 합의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거래행위를 계약 내용대로 보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어야 원천징수한다.

### 3. 원천징수세액계산 · 납부 · 완금 및 기타 절차

####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방법과 기안

① 지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 등은 매월 단위로 실제 소득지급일이나 법인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상 법인세 신고의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납부의 규정만 있는데 원천징수란 타법인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가 중요한 것이고, 지급법인 자체의 소득이 아니라 수취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산세도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미납부가산세만 미납액에 대해 5%와 미납기간에 하루 0.03%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만큼 부과하고 있는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본세와 함께 가산세(최고 한도 10%)를 추가한다.

②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

원천징수한 법인세 등의 납부시에는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

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한 제반 원천징수세액,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포함하여 납부하는데 납부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명세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⑨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2010. 3. 31 개정)

#### ③ 납부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하여 제출

납부서는 납세자용 영수증서, 세무서용 영수필통지서, 한국은행용 납부서 등 3매가 작성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물론 납부서는 은행 등에 현금과 함께 내면서 납부서 사본을 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우송한다.

## 2)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방법

#### ① 신탁재산의 별도 납세 및 신탁재산 관리 금융기관의 원천세액 차감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중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투자신탁재산 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지만, 당해 신탁재산을 운용·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가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관계에 있으므로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실제지급 및 이체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납부세액 = 총원천징수 납부할 세액 -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 선이자지급방식의 원천징수된 세액

신탁업 경영 금융기관과 위탁회사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기존의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외부의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차변에 선납세액으로 기장하고 신탁재산의 수익자 등에게 신탁이익이나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대변에 예수세액으로 기장하는데, 매월별로 예수세액에서 선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후의 총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받으며, 채권기간의 일부 기간만 보유한다면 이를 감안하여 중도보유 부분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신탁회사는 이러한 수익을 그 신탁재산의 수익자 등에게 이익으로 지급하는데 이 때 당해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서 귀속기간의 상당세액이 납부한 세액을 초과 발생하는 잔액인 음(-)의 잔액은 환급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매월 계속하므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서로 가감된다.

③ 신탁재산 귀속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의 가감절차

㉠ 각 신탁재산 소득귀속자별 신탁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법인세액

㉡ 금융기관 법인이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 취득시 원천징수당한 세액(가격지급시에 계산됨)

• 금융기관 등의 세액납부 : ㉠ > ㉡ + ㉢

• 금융기관 등에게 세액환급 : ㉠ < ㉡ + ㉢

• 금융기관 등이 본지점 모든 세액 가감하여 일괄납부시 환급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차감 상계·충당함.

#### IV. 원천징수세액 납부시기 특례제도 (법 제73조제7항)

본 조 제7항은 소규모법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원천징수 일반절차(매월 10일)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6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이 큰 금융·보험업은 제외한다.

##### ① 소규모법인의 범위

반기별 원천징수 가능한 소규모법인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직전년 12개월 월평균 20인 이하 법인으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①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② 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011. 6. 3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 ② 반기별 납부승인 및 신청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한다. 관련 규정은 다

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V.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와 애당

### 원천징수세액계산 (법 제73조제8항)

#### 1. 채권중도보유거래에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와 계산방법

① 채권중도매매시의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반영한 순거래가액

채권중도매매시의 채권가격구조를 단순화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권중도매매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채권의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채권가격의 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관련세액이 균형을 이룸을 알 수 있다.

【사 례】

○ 채권내역

－ 발행가액 : 100,000

－ 상환기간 : 1년

－ 이 자 : 12,000

－ 원천징수세액 : 14%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인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2. 적용 이자율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2008. 2. 29 개정)

## ③ 전환·교환청구일 이후부터의 별도 이자율 적용

상기 시행령 제2항제2호나목단서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 ▲ 시행규칙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2011. 2. 28 개정)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10. 4. 30 신설)

## ④ 할인대출어음 등의 할인액 전액

단기금융이나 표지어음의 경우 어음매출·인수·모집일의 실제이자율대로 액면금액이 기재된 어음을 할인매출하는데, 이자를 지급받는 자(할인구입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되기를 선택하면 할인매출시기를 소득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할인매출차액전액을 선이자지급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는 어음·표지어음 발행자 및 대리·위임자가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⑤ 일반채권·증권·양도가능예금증서 등의 소득 포함

채권보유·중도매각의 보유기간분 이자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일반채권·증권(국가·지방자치단체발행 채권·증권, 법인발행 채권·증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증권이며, 비과세·면세채권 등은 해당 안됨)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제반 증서(금융기관의 양도성 예금증서, 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통장거래분 아닌 것, 금융회사발행 매출·증개어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할인액이다.

## 2. 일반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의 중도보유·매도에 따른 원천징수와 외계처리 예시

법인간에 채권의 취득후 중도보유하다가 타인에 매도시 자기보유기간부분에 대한 기간귀속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징수하고 납부하므로 채권 구입회사는 채권양도회사에게 해당채권 대가와 이자에 대해 원천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다. 이로써 채권거래 당사자간의 채권매매 거래금액 계산과 원천징수세액계산이 편리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보유자가 최종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는 해당이자지급자가 최종보유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반면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는 채권 중도매매거래 당사자간에 매수자(금융기관은 제외)가 매도자의 보유기간부분 이자해당액에 대한 원천세액해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덜 받은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달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2010. 6. 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011. 3. 31 개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용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2010. 6. 8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2010. 6. 8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구 분	일반채권 중도매매	환매조건부채권 중도매매
채권중도 보유후 매도자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스스로 원천징수 계상후 납부	매도자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세액을 매수자가 채권대금 지급하면서 납부
채권매도자의 원천세액 차감환급	1년후 법인세액에서 차감	다음 달 원천징수 납부시 차감 환급가능
채권최종보유자의 만기이자수취시	이자지급회사가 최종보유기간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	이자지급회사가 환매채권 전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차감후 납부

회계·세무·원천징수에서 : 채권액면가 10,000원 1년당 이자 1,000원(10%)  
 3년 만기 최초취득 갑(1년 보유)→을(1년 보유)→병(만기까지 1년 보유), 이자는 매년 균등액 1,000원씩 발생인식되었다고 가정함(단위 : 원).

◎ 일반채권거래의 회계와 원천징수

〈갑의 취득〉	
(차) 채 권	10,000원
(대) 현 금	10,000원
〈갑의 양도시〉	
(차) 현 금	11,00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0,000원
수입이자	1,000원
제세예수금	140원
〈을의 취득〉	
(차) 채 권	11,000원
(대) 현 금	11,000원
〈을의 양도시〉	
(차) 현 금	12,00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1,000원
수입이자	1,000원
제세예수금	140원
〈병의 취득〉	
(차) 채 권	12,000원
(대) 현 금	12,000원
〈병의 만기상환이자 받음〉	
(차) 현 금	12,86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2,000원
수입이자	1,000원

◎ 환매채권의 거래회계와 원천징수

〈갑의 취득〉	
(차) 채 권	10,000원
(대) 현 금	10,000원
〈갑의 양도시〉	
을이 보유기간이자 1,000원에 대해 140원 원천징수세액 차감후 지급함.	
(차) 현 금	10,86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0,000원
수입이자	1,000원
(다음 달에 환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을의 취득〉	
(차) 채 권	10,860원
(대) 현 금	10,860원
〈을의 양도시〉	
병이 보유기간이자 1,000원에 대해 140원 원천징수	
(차) 현 금	11,72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0,860원
수입이자	1,000원
〈병의 취득〉	
(차) 채 권	11,720원
(대) 현 금	11,720원
〈병의 환매조건에 의하여 최종이자 받음〉	
(차) 현 금	12,580원
선납세금	140원
(대) 채 권	11,720원
수입이자	1,000원

〈채권발생회사의 회계처리〉				〈환매채권발생회사의 회계처리〉			
(차) 채권(상환)		10,000원		(차) 채권(상환)		10,000원	
지급이자		3,000원		지급이자		3,000원	
(대) 현	금	12,860원		(대) 현	금	12,580원	
제세예수금		140원		제세예수금		420원	
				세금 = 전체이자 3,000원 × 14% = 420원			

### 3. 원천징수 납부세액계산과 소득귀속배분계산

#### ① 채권 등의 수시 유통성과 원천징수안분

채권은 수시유통되며 만기 및 이자지급시까지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뀔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발생자·취득자·보유자·매도자들 중 추가소득지급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하는 자로 보는지와 소득발생시기 및 원천징수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 제73조제8항은 일반채권에 대한 이자수취전 중도매각시 매각자 본인이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계산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득지급자 본인, 소득지급의 대리·위임을 받은 자, 금융기관, 신탁재산관리운용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나 채권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귀속되는 보유기간부분 이자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이 모두 14%가 되도록 안분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며, 채권의 매매거래시에는 해당 이자소득 및 세액을 반영하여 총거래대금 혹은 순거래지급금액이 결정되도록한 것이다.

#### ② 채권중도 보유기간분 이자소득도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함

채권중도보유매매시 거래대가 순액은 채권자체의 액면가±채권매각손익+보유기간이자-기간이자관련 원천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데 보유기간이자⊖관련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순액이 된다.



## ④ 각종 채권과 거래상황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방법의 사례

채권의 액면가 1억원, 실효이자율 연 15%, 발행시 15% 할인발행으로 이자 지급완료하는 채권의 경우 각 구분별로 이자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계산 관계를 구분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확한 실제이율계산을 중시함).

종 류	일반채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 : 모든 국공채, 일반채권, 증권, 양도성증서 등)	할인매출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 : 금융사발행어음, 중개어음, 금융기관 등의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구 분	중도이자 혹은 만기 지급식	할인매출시 원천징수 안함(만기징수)	할인매출시 선원천징수선택 적용하고 만기시 전액지급(발행시 징수)
액면가	1억원	1억원	1억원
할인취득가	취득 9천800만원	8천5백만원	8천5백만원
1년간 이자 상당금액(실제이율)	1천5백만원(15%) 15%+2%=17%	1천5백만원(15%) 할인액이 이자임	1천5백만원(15%) 환매채권임
채권발행시의 원천징수	없음	없음	있음 1,500×14%=210만원
최초취득자의 구입액	9,8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210만원(세액)=8,710만원
최초 구입자가 8개월 보유 후 매각	매각가 10,900	매각가 9,500	매각가 9,600
• 보유기간중 이자 인식액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보유기간중 원천징수액	140만원(14%)	140만원(14%)	140만원
• 채권보유기간 가격상승	100만원		
• 원천징수납부자	최초 취득후 양도자(차변)	최초 취득후 양도자(차변)	최초 취득후 양도자(차변)
• 회계처리	현금 10,900 선납세금 140 (대변) 채권 9,800 채권양도차익 100	현금 9,500 선납세금 140 (대변) 채권 8,500 수입이자 1,000	현금 9,600 선납세금 140 (대변) 채권 8,710 수입이자 1,000

	수입이자 1,000 체세예수금 140	채권매각이익 140	채권매각익 30
중도취득자 4개월 보유 후 만기상환 • 구입금액	10,900만원	8,500 + 1,000 = 9,500 만원	8,500 + 1,000 + 100 = 9,600만원
• 만기이자인식액	1,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원천징수의무자	발행자(만기상환자)	발행자(만기상환자)	발행시 원천징수완 료함.
• 발행자의 원천징 수	70만원 (=500만원×14%)	70만원 (=500만원×14%)	70만원 (=500만원×14%)
• 발행자의 지급금 액	114,300,000만원=(1 억 + 1,500만원 - 70 만원)	99,300,000만원=(1 억 - 70만원)	1억원(당초에 원천 징수한 상태로 매출 했으므로)
• 회계처리	(차변) 현금 114,300,000 선납세금 700,000 (대변) 채권 109,000,000 수입이자 5,000,000 채권양도차익 1,000,000	(차변) 현금 99,300,000 선납세금 700,000 (대변) 채권 95,000,000 수입이자 5,000,000	(차변) 현금 1억원 선납세금 70만원 채권거래손실 30만원 (대변) 채권 9,600만원 수입이자 500만원

⑤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

신탁업 경영 금융기관,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 4. 채권 등 보유·양도관련 원천징수 일반사항

##### ① 이자소득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채권의 유통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선이자방식, 후이자방식, 할인매출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인매출로 선이자지급방식인 경우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자소득인 경우는 실제 지급받은 날·약정상의 이자지급개시일·상환일·해약일·인출일·원본전입일·채권매매일·환매수일·환매도일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190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② 채권종도매매의 범위와 관리재산·고유재산 이체의 원천징수의무자

채권·증권의 일반매출, 즉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매출이나 채권의 환매 등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채권의 매도에는 일반매도·양도 뿐 아니라 고유재산 계정의 채권을 관리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반대로 관리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이때 재산관리법인이 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는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선납세액으로 계상하는 법인이 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개정)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시행규칙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③ 채권의 중도매각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등**

-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 수익증권 보유기간중의 총이익 혹은 분배금만 안분함(즉, 채권 등 액면가×보유기간×약정이자율하는 총액방식 아님).
-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동일 유가증권 양도의 보유기간 계산 : 개별법 ·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 등으로 취득양도 시점 계산함.
- 보유기간계산 : 채권 등 발행조건의 이자계산일수의 약정에 의함.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

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2008. 2. 29 개정)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 ▲ 시행규칙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2008. 3. 31 개정)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 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로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 ④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에 채권중도매매시 보유기간이자계산

비금융회사 등이 금융회사 등에게 보유채권 등을 중도매매시 보유하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서 원천세액을 뺀 나머지를 채권구입자가 구입대금에 얹어주는 식이다. 일반관계에서 볼 때는 채권구입자, 즉 금융회사 등이 채권을 중도에 매각한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으며 보유기간 원천세액을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73조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채권 등의 이자를 지불받기 전에는 채권양도자가 자신의 보유기간이익에 대해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천징수 대리관계는 아니다. 비금융회사 등이 금융회사 등에 채권의 중도매매시 매

도법인 자신이 보유기간이자계산하고, 선납세액계산후 거래차액을 채권매매손익으로 기록한다.

⑤ 선지급이자의 전액 원천징수된 후 중도양도시 전액 공제금액 중 일부의 가산납부

채권에 대해 할인매출 혹은 이자의 선지급을 받는 경우 선지급이자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채권발행자 혹은 이자 선지급자가 전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며, 채권보유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결산시 선납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전액 공제받는다.

그러나 선이자에 대해 전액 선납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차감납부한 법인이 다음 연도 중 중도매각하여 자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금액이 실제의 자기 귀속소득 해당세액보다 많으면 너무 환급을 많이 받은 결과가 되므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⑥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중도매도는 때마다 신규 매출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채권(매출시 원천징수한 채권에 한함)을 이자계산기간중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의 매도를 증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채권을 중도매도일에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어음(CP) 등의 경우 이자율(할인율)이 표시되지 않아 중도매매시

보유자별 이자상당액 및 세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중도매도시마다 채권을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 관련법령

#### ●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금액 등】

⑪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⑦ 선지급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 나중납부의 사례

- 채권의 기간 : 00년 9월 1일 ~ 01년 8월 31일
- 채권액면가액 : 1억원, 이자 12%, 선지급조건 선원천징수이행
- 법인의 결산기간 : 00. 1. 1 ~ 00. 12. 31
- 채권의 중도매매 : 01년 5월 1일(보유기간 : 8개월)
- 00년 12월 31일의 결산시점 : 수입이자(손익반영) : 4백만원(=1억원×12%×(4/12))
- 선수수익 : 8백만원(=1억원×12%(8/12))
- 원천징수세액의 선납 : 세액공제=1억원×12%×14%=168만원
- 01년중 보유기간경과 : 수입이자 : 4백만원(손익반영) : 56만원은 선납세액
- 01년중 중도매각 : 선수수익 400만원 취소분개(×14%=56만원 세액은 취소반환)
- 01년 결산에 대해 가산 추가납부할 법인세액=400만원×14%=56만원(가산납부)